

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출자

- 본 개정안은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.

2.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경기도지사의 경계 변경 승인

3. 제안 이유

- 경기도의 법정동·면간 경계 변경 승인에 의거 갈산동 일부(16,641㎡) 및 증포동 일부(14,346㎡)가 창전동으로, 신둔면 도암리 일부(64,836㎡)가 송정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통·리·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-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현대아파트 203동(棟)을 갈산동에서 창전동으로 편입함에 따른 창전동 11통·반의 관할 구역 조정 및 신둔면 도암리 일부를 송정동 2통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 조정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정동·면간 경계 변경 승인에 따른 통·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, 법정동과 면간의 경계변경과 동시에 변경 조정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